

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공청회 개최 계획

□ 개최목적

- 「중소기업 범위개편(안)」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

□ 개요

- 일시 : 2013. 10. 16(수) ~ 18(금), 15:30 ~ 17:30

- 업종별 개최일정

- ① 10.16(수) : 1군(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)
- ② 10.17(목) : 2군(도·소매업, 음식·숙박업)
- ③ 10.18(금) : 3군(기타업종*)

* 기타업종 : 출판·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, 전문,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농·림·어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금융 및 보험업, 예술·스포츠·여가관련 서비스업,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교육 서비스업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

- 장소 : 중소기업연구원 대회의실 (상암동 중소기업 DMC 빌딩 10층)

* 위치 :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 8번 출구

- 주최 : 중소기업청

□ 세부진행 일정

15:30~ 15:35	개회 및 인사말씀	중소기업청 차장(또는 중소기업정책국장)
15:35~ 15:45	주제발표 및 사회	중소기업 범위개편(안) 주요내용 (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)
15:45~ 17:30	토론	- 표한형 (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위원) - ○○○업계대표(○○전무) 등 5~6명 - 방청객 : 관련업계 및 전문가(약 40명)

* 토론참석 패널(업계대표 5~6명) 및 방청객 일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조합 추천 등으로 구성

<붙임> 중소기업범위 조정(안) 주요 내용

<붙임>

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(안) 주요내용

1 중소기업 범위 기준 재설정

□ 개편방향

- 피터팬 증후군을 차단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전면 재설계
 -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인 2개 기준(상시 근로자, 자본금 또는 매출액)을 매출액(3년 평균)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
 - * 업종별 세부 평균매출액 적용 기준은 공청회에서 발표 예정

□ 개편이유

- 현행 적용 지표인 상시 근로자수와 자본금 지표는 중소기업 범위의 왜곡 초래 가능성
 - 상시근로자수 인위적 조정 등으로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하여 성장한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
 - 자본거래(주식발행초과금 등)에 의해 주로 증감되는 자본금으로 기업 성장을 판단하기 곤란
 - * '06~'11중 평균 중견기업중 73개 기업이 인위적 방법(근로자 감소 49.9%, 자본 변동 34.1%)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편입

□ 기대효과

- 적용지표가 기업의 성장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고,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

2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한

□ 개편방향

-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

□ 개편이유

-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이 공공구매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다시 편입되는 경우, 최소 4년간(당해 연도 + 유예 3년) 유지 가능

□ 기대효과

- 반복적 악용을 막아 효율적 중소기업 지원 및 도덕적 해이 방지

3 기타 외투 및 창업, M&A 기업 등에 대한 불합리 해소

- ① (외투기업) 단기 환율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문제를 감안,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시, 5년 평균 환율을 적용

* 현재는 직전 연도 말 또는 직년 연도 평균 환율 적용 중

- ② (창업기업) 대기업과 무관한 고속성장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 1년 이내 상한기준 초과 기업은 유예(3년) 인정

- ③ (M&A 기업) '중견-중소기업'간 M&A시, 피인수 중소기업에게 유예 기간을 부여하되, 벤처·이노비즈·R&D 우수기업 등에 한정

- ④ (관계기업) 합병·분할·폐업 등으로 기업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, 전년도 자료가 아닌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산정

- 창업기업의 경우, 창업연도에는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적용